



제429회국회(정기회)
제8차 국방위원회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방위산업기술 국외유출시 범죄구성요건 완화 및
법정형 상향〉

■ 유용원의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3043호)

2025. 11.

국 방 위 원 회
전문위원 서 덕 교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 1) 발 의 자 : 유용원의원 등 16인
- 2) 발의연월일 : 2025. 9. 17.
- 3) 회 부 일 : 2025. 9. 18.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방위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 행위를 한 사람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20억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을 입증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상응하는 처벌을 적용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범죄의 구성요건을 기존의 목적성에서 고의성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으며, 나아가 국가 안보를 위하여 방위산업기술의 국외 유출 행위를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외국에서 사용될 것을 알면서 방위산업기술을 유출하거나 침해한 사람을 처벌하고, 벌칙 수준을 현행 1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20억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과 동일한 벌금으로 상향함으로써 방위산업기술 유출을 방지하고 국가 방위산업기술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1항).

Ⅲ. 검토의견

- 현행은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방위산업기술을 유출하거나 침해한 경우¹⁾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및 2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범죄구성요건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이라는 가중된 형식의 구성요건(목적범)으로 규정하고 있어, 목적성을 증명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동 규정을 적용하여 처벌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 또한, 국가안보를 위하여 방위산업기술의 국외 유출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음.

- 개정안은 이와 같은 제도적 실태를 고려하여 방위산업기술이 외국에서 사용될 것을 알면서 유출 및 침해행위를 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및 6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벌하려는 것임.

1)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제10조(방위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4.12.3.>

1. 부정한 방법으로 대상기관의 방위산업기술을 취득, 사용 또는 공개(비밀을 유지하면서 특정인에게 알리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행위
2. 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고 방위산업기술을 취득·사용 또는 공개하는 행위
3. 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방위산업기술을 취득·사용 또는 공개하는 행위
4. 제19조 또는 대상기관과의 계약 등에 따라 방위산업기술에 대한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자가 방위산업기술에 대한 보유 또는 사용 권한이 소멸됨에 따라 대상기관으로부터 방위산업기술에 관한 문서, 도화(圖畵),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의 반환이나 방위산업기술의 삭제를 요구받고도 이를 거부 또는 기피하거나 그 사본을 보유하는 행위
5. 제19조 또는 대상기관과의 계약 등에 따라 방위산업기술에 대한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자가 방위산업기술에 대한 보유 또는 사용 권한이 소멸됨에 따라 대상기관으로부터 방위산업기술에 관한 문서, 도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의 반환이나 방위산업기술의 삭제를 요구받고도 중대한 과실로 이를 거부 또는 기피하거나 그 사본을 보유하는 행위

즉, 범죄구성요건 부분에서 그 증명이 엄격한 ‘목적범’ 대신 일반 ‘고의범’으로 완화하고, 법정형을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및 20억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및 65억원 이상의 벌금’으로 상향한 것임.

현행	개정안
제21조(벌칙) ① <u>방위산업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u> 제10조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u>1년</u>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이 경우 <u>20억원</u>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제21조(벌칙) ① <u>방위산업기술이 외국에서 사용될 것을 알면서</u> ----- ----- ----- ----- <u>3년</u> ----- ----- <u>65억원</u> ----- -----.
② ~ ⑦ (생략)	② ~ ⑦ (현행과 같음)

□ 개정안은 다음의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음.

첫째, 현행은 범죄구성요건에서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을 요구하고 목적범으로 규정하고 있어 그 목적을 현실적으로 증명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음.

목적범²⁾이란 범죄구성요건에 정의된 그 행위를 고의로 했을 뿐만 아니라, 가중구성요건적 요소로 법익 침해의 결과를 불러올 목적이

2) 반면, 대부분의 범죄는 고의범으로, 구성요건에 규정된 그 행위를 고의로 하기만 했으면 법익 침해의 결과를 불러올 목적이 없어도 범죄가 성립함.

있었다는 것까지 증명돼야 성립하는 범죄라는 점에서 그 목적을 현실적으로 증명하여 동 처벌규정을 적용하기가 쉽지 않은 실정임.³⁾

둘째, 방위산업기술의 국외 유출로 인한 국가적 이익 침해 내지 국가안보 위험성을 고려할 때 현행 처벌 수준으로는 범죄예방적 효과가 낮으므로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함.

최근 전반적인 산업 분야에서 기술유출로 인한 피해가 막심하고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방위산업기술 보호 필요성도 그만큼 커지고 있는 상황임.

방위사업청은 2020년 3월부터 ‘방위산업기술 유출·침해사고 신고 센터’를 설치·운영하여 신고 접수 시 정보수사기관과 합동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조사 결과 현재(2025.9)까지 5년간 방위산업 관련 자료유출은 53건에 달하고 있음.

3) 참고로 수원지방법원 2018. 1. 12. 선고 2016고단6150 판결[업무상배임,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에서는 국가핵심기술자료 및 영업비밀자료를 무단으로 반출하였으나, 부정한 목적으로 반출했는지 입증되지 않아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영업비밀 유출 관련 업무상배임죄에 대한 무죄를 선고하였음.

[방위산업기술 유출 신고 접수 및 조사 결과(2020.3 ~ 2025.9)]

(단위: 건)

구 분		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25. 9월
신고접수		104	12	28	15	7	25	17
조사결과	유출	53	6	8	3	5	17	14
	미유출	36	6	14	11	1	2	2
	확인불가 ⁴⁾	15	0	6	1	1	6	1

*자료: 방위사업청

셋째, 위와 같은 취지에서 2025년 1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도 국가핵심기술의 국외 유출의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및 ‘65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벌금형의 법정형을 상향하였음.⁵⁾

방위산업기술의 국외 유출의 경우에도 국가핵심기술의 유출 못지 않게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국가핵심기술과 유사하게 법정형을 강화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4) 확인불가는 인력에 의한 분실, 업체의 사이버 공격 관련 로그 기록 미유지로 추적 불가 등임.

5)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6조(벌칙)① 국가핵심기술이 외국에서 사용될 것을 알면서 제14조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이 경우 65억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2025. 1. 21.>

② 산업기술이 외국에서 사용될 것을 알면서 제14조 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1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제외한다)는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2025. 1. 21.>

[국가핵심기술과 방위산업기술 비교]

국가핵심기술	방위산업기술
국내외 시장에서 차지하는 기술적·경제적 가치가 높거나 관련 산업의 성장잠재력이 높아 해외로 유출될 경우에 국가의 안전 보장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중대한 악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기술로서 「산업기술 보호법」 제9조에 따라 지정된 것	방위산업과 관련한 국방과학기술 중 국가안보 등을 위하여 보호되어야 하는 기술로써 방위사업청장이 「방위산업기술보호법」 제7조에 따라 지정·고시한 것

□ 다만, 처벌의 수위와 관련하여 법정형의 종류와 범위의 선택에 있어 입법 당시의 시대적 상황과 국민 일반의 가치관 내지 법감정, 범죄의 실태와 죄질 및 보호법익과 범죄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음.⁶⁾

또한 현행 법정형 규정은 2025년 6월 4일 개정·시행되고 있는데, 개정안과 동일한 취지에서 종전의 ‘20년이하의 징역 또는 20억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및 20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법정형을 이미 강화한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⁷⁾

6) 91헌바11 전원재판부

7) 2025년 6월 4일 개정·시행된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개정 전·후 비교

종 전	현 행
제21조(벌칙) ① 방위산업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제10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후단 신설>	제21조(벌칙) ① -----제10조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 이 경우 20억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기술유출 등 처벌 입법례 비교]

	종전	현행 (2025.6.4.)	개정안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해외 유출 · 침해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억원 이하의 벌금 (임의적 병과) (제1호 및 제2호)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및 20억원 이하의 벌금 (필요적 병과) (제1호·제2호 및 제4호)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및 65억원 이하의 벌금 (필요적 병과) (제1호·제2호 및 제4호)	[국가핵심기술]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및 65억원 이하의 벌금 (필요적 병과) [산업기술]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억원 이하의 벌금 (임의적 병과)

□ 국방부는 방위산업기술 보호 및 유출·침해 행위의 실효적 방지를 위하여 벌칙대상 행위의 구성요건을 완화하고, 벌칙 수준을 상향하는 개정안에 동의하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312